

2017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

"나는 가장이다" 사업 신청 안내문
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(임차보증금 대출)을 시행합니다.

1. 사업 개요

- 가. 사업명 : 2017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「나는 가장이다」
- 나. 주관/후원 :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, 서민주택금융재단
- 다. 사업내용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(신용회복중인 세대(성실상환) 최대 3백만원)
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
- 라. 사업대상 :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%이하 한부모
- 마. 상환방법 :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
- 바. 대출규모 : 총 ○○세대 (2017년 2차)
※신청자가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2. 사업 내용

- 가. 대출금액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(신용회복중인 세대(성실상환) 최대 3백만원)
※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**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**

○ 전·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(신규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)

- 1)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: 750만원 - 500만원 = 250만원 (⇒대출 가능금액: 250만원)
- 2)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: 800만원 - 200만원 = 600만원 (⇒대출 가능금액 500만원/본인 부담금액 100만원)
- 3) 임대주택: 보증금 5,000만원(본인부담금 250만원)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,000만원 (본인부담금 400만원)으로 상향된 경우
: 400만원 - 250만원 = 150만원 (⇒대출 가능금액: 150만원)

- 나. 대출조건 :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

구분	신규 또는 재계약일(당해 연도)	잔금지급일
1차	2017. 1. 1. ~ 6. 30.	2017. 1. 1. ~ 7. 31.
2차	2017. 4. 1. ~ 9. 29.	2017. 4. 1. ~ 10. 31.
3차	2017. 7. 1. ~ 12. 29.	2017. 7. 1. ~ 2018. 1. 31.

※ 단 LH/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,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(입주일)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

- 예) 임대주택 계약일이 '16년 8월 1일/ 잔금 지급일(입주일)이 '17년 7월 31일 이전일 경우 1차에 신청 가능
- 임대주택 계약일이 '16년 11월 1일/ 잔금 지급일(입주일)이 '17년 10월 31일 이전일 경우 2차에 신청 가능
- 임대주택 계약일이 '17년 2월 1일/ 잔금 지급일(입주일)이 '18년 1월 31일 이전일 경우 3차에 신청 가능

다. 대출금 상환 방법 :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상환

대출금	상환 금액	상환기간	비고
3백만원 이하	매월 5만원	최장 60개월	차액은 만기에 정산
3백만원 초과 ~ 3백5십만원 이하	매월 6만원	최장 59개월	
3백5십만원 초과 ~ 4백만원 이하	매월 7만원	최장 58개월	
4백만원 초과 ~ 4백5십만원 이하	매월 8만원	최장 57개월	
4백5십만원 초과 ~ 5백만원 이하	매월 9만원	최장 56개월	

라. 성실 상환자 10% 인센티브 지원

• 1년간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	: 대출금의 2% 해당액 지급
• 2년간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	: 대출금의 3% 해당액 추가지급
• 만기까지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	: 대출금의 5% 해당액 추가지급

3. 신청 대상

가. 공통 기준: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

1) 만 18세 이하(취학 시 만 22세 이하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%이하

〈2017년 기준 중위소득 72%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〉					(단위: 원)
가구원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	비고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	
2인	2,026,000	62,599	45,657	63,330	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
3인	2,621,000	80,756	80,407	81,698	
4인	3,217,000	99,426	107,314	100,677	

※ 가구원수 :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
 만 18세 이하 : 1999.1.1. 이후 출생자 (취학자녀 : 1995.1.1. 이후 출생자)

2)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: 대도시 (특별시, 광역시의 “구”(도농복합 “군” 포함) 5,400만원 이하,
 중소도시 (도의 “시”와 특별자치시·도) 3,400만원 이하,
 농어촌 (도의 “군”) 2,900만원 이하

나. 대출 대상: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- 1) (월세, 전세)보증금이 인상되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는 세대
- 2)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세대
- 3) 비주택 거주 (한부모가족복지시설, 여관, 쪽방, 고시원, 비닐하우스, 쉼터 등)나 친·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

다. 대출 불가 세대: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

- 1)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
- 2)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(민법상 대출 불가)
- 3) 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4)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- 5)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6) 신용관리 대상자 (개인회생, 파산)

*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,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

-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인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 상환중인 자
(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)
-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

※ 대출불가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, 향후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

4. 사업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대출 신청 서류 접수 (3회 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차: 2017. 4. 3.(월) ~ 4. 21.(금) • 2차: 2017. 6. 26.(월) ~ 7. 14.(금) • 3차: 2017. 9. 18.(월) ~ 10. 13.(금) 	-대출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유효 -접수 마감일자 등기우편 소인 유효
최종 심사 대상자 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차: 2017. 5. 19.(금) • 2차: 2017. 8. 11.(금) • 3차: 2017. 11. 10.(금) 	-선정자 발표 ①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 ②선정된 신청기관으로 공문발송 예정
대출 약정 서류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종심사대상자 발표 시 대출약정절차 안내 예정(본 센터 홈페이지, 선정기관) •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약정서류 제출해야 함 (신청기관에서 선정자로부터 제출받아 본 센터로 발송) 	
대출금 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약정서류 접수 완료 후 일정에 맞춰 대출금 지급 	
입금시기(예정): 1차_6월중, 2차_9월중, 3차_12월중		

※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

5. 제출 서류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구분	구비서류	작성요령		
필수서류	신청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식1. 신청기관 총괄표(엑셀) • 서식2. 신청기관 신청서(한글) 	-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(서식1~5) 참조 -총괄표는 '작성요령'에 맞춰 정확한 내용 기입 -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	
	신청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식3. 대상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• 서식5. 상환계획서 •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	-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-신청 전 신규(재계약)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① 기존계약서(사본) ② (확정일자 받은)신규계약서(사본) • 서식4. 사실확인서 (해당인 경우) 	* 사실확인서 제출 대상 ①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② 무상임차·비주택 거주자 -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-시설거주자는 '시설임소 확인서' 제출	
		소득 증빙 서류 (택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(50%이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2.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52%이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3. 기준 중위소득 52%초과~72%이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2017년)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	- (해당)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- (해당)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: 사실확인서(서식4)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
		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★ 심사평가시 가점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약저축 확인서(전체 납입회차 확인) 1부 • 장애인증명서 1부 신용회복 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•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	-신청인 명의의 청약저축에 한함 -가구원 중 장애등급 1~3등급인 경우에 한함 -신용회복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-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

※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(www.seoulhanbumo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, 구비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'서식 4 사실확인서' 를 첨부하여야 함

5. 접수 방법(제출 순서)

가. (신청기관 담당자)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 후 이메일 제출

- 이메일 제출처: hanbumohouse@naver.com (사업 전용 메일)
- 제목 및 파일명: “(기관명)_2017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”(파일압축)
- 신청기관 총괄표는 엑셀파일로 제출

나. (신청기관 담당자) 원본 등기우편 제출

- 주소: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강서수도민원센터 2층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「2017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」 담당자 앞
-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소인 유효

다. (본 센터) 제출서류 접수 및 확인

6. 신청기관 유의 사항

- 1)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을 통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- 2) 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번호는 뒷 7자리를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.
- 3) 「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 3)」은 신청자 자필로 작성, ‘본인 확인 및 자필 확인’ 란은 신청기관 담당자가 직접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.
- 4) 「사실확인서(서식 4)」는 신청기관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. (기관 직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)
- 5) 모든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‘원본대조(담당자 확인)’ 해야 합니다.
- 6)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.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. (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는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)

7. 대출 진행 기본 원칙

심사 원칙	• 대출을 신청한 대상자의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
대출 사업 원칙	• 이미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(형평성 고려)
신청 기관 협력지원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·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(개인신청 불가) •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,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, 대출약정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취합하여 본 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-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(거주지 이전, 연락처 변경 등)가 변경될 경우, 본 센터로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다. -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, 신청기관에서는 대출지급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합니다.

8. 문의

○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

홈페이지. www.seoulhanbumo.or.kr

T. 070-7475-3018 | E. hanbumohouse@naver.com | F. 070-7469-3024